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8. 18 선고 2020가단471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고 1. A

2. B

3. C

피고 1.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민 담당변호사 박세희

2. E

변론 종결 2020. 7. 21.

판결 선고 2020. 8. 18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5,000,000원, 원고 B, C에게 각 30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. 12. 27.부터 2020. 3. 5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유지상

별지